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이소영・오기형・위성곤

김동아ㆍ허 영ㆍ박희승

조인철 · 염태영 · 복기왕

민병덕 • 정진욱 • 주철현

박지원 • 양부남 • 한창민

오세희 • 백승아 의원

(179]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)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.

이미 캐나다, 스웨덴,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%를 돌파한 반면,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%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.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한편,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.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 $100\sim1,000$ 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,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) ①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및 그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27조의3(신ㆍ재생에너지 설비 |
|                    |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   |
|                    | 준) ①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 |
|                    | 설치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  |
|                    |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  |
|                    |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  |
|                    |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|
|                    |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없다.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②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및  |
|                    | 그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|
|                    |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   |